

미국의 탐정제도에 관한 연구

강영숙* · 김태환**

〈목 차〉

- I. 서 론
- II. 미국탐정제도의 역사적 배경과 전망
- III. 미국 탐정제도의 운용 실태
- IV. 결론 및 제언

〈요 약〉

급진적인 사회변화에 따른 각종 범죄 증가로부터 개인의 안전욕구와 재산 및 권익보호에 대한 치안수요 증가는 전체적인 시큐리티의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는데, 특히 그 가운데에서도 의뢰인을 위한 민간차원의 전문적인 조사, 정보획득 활동을 통해 진실여부를 파악하고, 개인, 기관 및 기업 등의 조직체의 신용조사를 통해 신용불량자 및 사기범죄를 예방하는 간접적인 치안 활동을 수행하는 공인탐정제도와 같은 민간영역(Private Sector)의 치안서비스는 외국에서는 이미 사회적 치안수요 해결이라는 중요한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탐정제도가 가장 발달된 미국의 탐정제도의 역사적 배경과 운용실태를 파악해 봄으로써 추후 한국 실상에 맞는 공인탐정제도 도입 후 국민의 인권보호, 국가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발전적인 방안 및 세부적인 대안을 위한 학문적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탐정업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와 고용 등의 급속한 증가 추세로 탐정제도와 그 직업적 전망은 매우 밝다.

둘째,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민간영역을 활용한 국민의 치안서비스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국가의 치안서비스 부담은 감소되었지만 탐정업무 상 개인의 인권과 사생활 침해 등의 불법영역에 대해 미국 각 주(State)의 탐정협회가 교육을 통한 자각과 교육프로그램도 있지만, 미국 대부분의 주(State)들은 점점 탐정법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셋째, 아직 우리나라의 탐정제도가 시행되지는 않고 있지만 추후 제도 실시에 따른 법률 규정의 지속적인 수정 보완과 제도 정착 및 발전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위해선 미국 뿐 아니라 다른 외국의 세부적 탐정제도의 지속적인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본 연구는 방대한 미국의 전체적인 탐정제도 내용을 다룰 수가 없음을 한계로 제시하였으며 우리나라 탐정제도의 실행에 앞서 지속적인 후속 연구로 보완하고자 한다.

【주제어 : 탐정, 미국탐정제도, 민간치안서비스, 민간조사원, 공인탐정】

* 경운대학교 경호학부 겸임교수, 용인대 경호학박사과정 수료 (제1저자)

** 용인대학교 경호학과 교수, 공학박사 (공동저자)

I. 서 론

현대사회는 자본주의적 산업사회의 물질적 번영으로 인한 경제규모의 팽창과 함께 정보통신기술 등의 급속한 변화는 수평적 네트워크의 활성화, 다원적이고 분권적인 사고의 확산으로 시민의 정치·경제·사회적 활동영역을 비약적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급진적 사회변화에 따른 각종 범죄 증가로부터 개인의 안전육구와 재산 및 권익보호에 대한 치안수요 증가는 국가 전체적인 시큐리티의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지만,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민생치안을 전담하는 국가기관의 치안서비스는 각종 범죄의 증가와 국가기관의 인력 부족과 한정된 활동 등의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하여 국민 개개인의 치안 수요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국가수사기관의 각종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발견에도 이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의뢰인을 위한 민간차원의 전문적인 조사, 정보획득활동을 통해 진실여부를 파악하고, 개인, 기관 및 기업 등의 조직체의 신용조사를 통해 신용불량자 및 사기범죄를 예방하는 간접적인 치안활동을 수행하는 공인탐정제도와 같은 민간영역(Private Sector)의 치안서비스는 외국에서는 이미 사회적 치안수요 해결이라는 중요한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 OECD(국제협력기구)회원국 중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의뢰인의 요구에 의하여 비용을 받고 민간인 차원 혹은 법에서 정한 일정범위의 권한을 부여받은 상태에서 조사업무를 제공하는 탐정(Private Investigator, Private Detective)제도를 제도화하고 있거나 허가하고 있으면서 많은 기업, 개인, 국가 등의 사건을 해결하는데 실제적으로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미국 대부분의 주와 프랑스, 스페인, 캐나다, 독일, 벨기에, 호주, 싱가포르 등 상당수의 국가들이 엄격한 자격시험과 고도의 훈련을 거쳐 취득한 면허나 자격을 부여하는 공인탐정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도 국가자격증이 아닌 민간자격증으로 누구나 탐정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다가 그 폐해와 부작용이 커지자 '탐정업에 관한 법률'¹⁾ 시행을 최근 최종 통과하여 적어도 1년 안에 법률에 의거한 공인탐정제도의 시행을 본격화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외국 여러 나라의 상황을 조망해 볼 때 우리나라 탐정제도의 미비로 인한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의 탐정업무 및 활동의 불합리한 역차별 구조해결 뿐만 아

1) 第164回 衆第25号 議案件名 '探偵業の業務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案'은, 2006年5月25日에 衆議院, 6月2日에 參議院에서 審議 可決을 거쳐 6月8日 법률 第60号 '탐정업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로 공포되었다.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에서 정한 날에 시행하기로 한다. <http://www.shugiin.go.jp>.

나라 이미 상당한 규모로 형성된 세계 탐정시장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냐는 측면은 우리나라의 행정규제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치안서비스 해결, 국제 경쟁력 제고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 개방화 시대에 대응한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성장은 물론 탐정관련 업무가 음성적, 불법적으로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국민들이 갖고 있는 과거의 부정적·불법적인 탐정의 이미지를 일식시키는 등 공인탐정제도의 긍정적인 면이 사회 전체에 주는 효과와 영향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 공인탐정제도의 도입과 시행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탐정제도가 가장 발달된 미국 탐정제도의 역사적 배경과 운용실태 및 관련 규정들을 파악해 봄으로써 추후 한국 실상에 맞는 공인탐정제도 도입 후 국민의 인권보호, 국가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발전적인 방안 및 세부적인 대안을 위한 학문적 기초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현재 관련법에 의해 시행 중인 미국전체의 탐정제도를 파악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므로 몇몇 주에 관한 탐정제도의 규정과 운용실태 등 그 밖의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 인터넷, 관련문헌, 미국의 탐정관련 법률규정 등의 문헌조사연구에 의한 연구를 한계로 두고 있다.

II. 미국 탐정제도의 역사적 배경과 전망

1. 탐정제도의 기원

세계 최초의 탐정기관은 영국의 'Bow street runner'라는 자치체(自治體)에 속한 소수의 조직이었으며, 이는 1829년에 창설된 스코틀랜드 야드(런던 경시청)에 흡수되었다. 1748년 영국 보우 가(Bow Street)의 치안판사로 임명된 헨리 필딩(Henry Fielding:1707~1754)이 시민들에게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시민 스스로가 단결해야 한다는 개념을 주장하였는데, 그는 타락한 보우 가(Bow Street)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시민들 중 지원자에 의한 소규모 단위의 범죄예방조직을 만들고 그들의 활동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였으며, 1785년경에는 인류역사상 최초의 형사기동대라 할 수 있는 'Bow street runner'를 창설하여 형사조직으로 경찰활동을 통한 범죄를 예방하는 전략

을 창안하였다.)

또한 1832년 파리의 경찰 첩보부원이던 비도크(Francois-Eugene Vidocq, 1775~1857)³⁾가 경제홍신소를 개설하였지만 영국의 'Bow street runner'와 같이 공공기관의 형식을 띠고 있었다.

사립탐정사무소로서 세계 최초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1850년 앨런 핑커튼(Allan Pinkerton:1819~1884)이 시카고 경찰서의 첫 탐정이 된 후 미국 미드웨스턴(Midwestern)에서 창설한 'Pinkerton National detective agency'이다. 당시 핑커튼은 철도경비와 여러 가지 임무수행과 함께 링컨(Abraham Lincoln) 대통령의 경호임무까지 맡으면서 범죄 수사과 같은 공적 영역은 물론 사적 영역에서도 그의 실력을 인정받아, Pinkerton Agents(or Pinks)라는 명성과 영향력은 미국 전역에서 신화 같은 존재였다⁴⁾. 당시 미국의 주(州) 경찰은 도망간 범법자를 체포하거나 수사하는데 사법권 관할이라는 한계에 있었던 반면에 핑커튼 탐정회사를 비롯한 몇몇 탐정회사들은 주(州) 경계를 넘어 전국에 걸쳐서 범법자를 추적할 수 있었으며, 오늘날 핑커튼 탐정서비스회사⁵⁾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규모의 방대한 회사가 되었다.

핑커튼은 스코틀랜드 야드에서 근무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스코틀랜드 출신의 이민자로서, 남북전쟁 때에는 북군에 속하여 첩보활동에 종사하였으며 미국의 초대 정보국장을 지냈다. 핑커튼은 '사람의 눈'을 사무소의 마크로 삼았으므로, 미국에서는 속어로 'eye' 또는 'private eye'라고 하면, 사설탐정을 가리킨다.⁶⁾ 또한 번즈(William

2) 이윤근·배철호(2005), 「민간경비론」, 엑스퍼트, p.23.

3) 프랑스와 외젠 비도크(Francois-Eugene Vidocq) : 19세기 프랑스의 실존인물인 비도크는 평민으로 태어나 도둑 강도, 인신매매, 밀매, 위조 등 온갖 범죄를 저지르던 그는 감옥을 안방처럼 들락거렸고, 탁월한 변장술로 50여 차례나 탈옥한 전설적인 '괴도'였다. 쫓기는 삶에 지친 그는 경찰의 꼬나풀 노릇을 하면서 공로를 인정받아 무 보수인 경찰전속 탐정으로 활동하다 1812년 비도크는 자신과 같이 개심한 전과자를 중심으로 범죄 수사국 슈르 테를 창설한다. 1820년에 수사관은 삼백여 명에 이르렀고, 파리의 범죄율은 40%나 줄어들었다. 괴도 뤼팽"의 실 제 모델이 될 정도로 그가 체험한 기이한 범죄들을 기록한 <회상록>(1829)은 이후 에드가 앨런 포, 코난 도일, 모리스 르블랑 등 많은 추리작가들에게 영감의 원천을 제공했다. <http://kin.naver.com>

4) John P. Kenny·Harry W. More(1994), Principles of investigation, West Publishing Company, p.5.

5) Allen Pinkerton은 1850년경 시카고 지역에서 Pinkerton탐정사무소를 설립하여 1855년 미국서부지역의 철도 경비를 맡아서 본격적인 민간경비시대를 열었다. Pinkerton이 처음 손을 댄 사건은 일리노이 주 철도사건이었는데, 당시 일리노이 주 철도 회사 측 변호사는 에이브러햄 링컨이었다. 그는 1890년대 말 미국 서부지역을 휩쓸던 은행, 열차강도들을 추적하여 섬멸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으며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는 북군을 위한 육군 첩보부를 설립하였고 나중에 이 기관의 책임자가 되어 링컨대통령의 암살계획을 사전에 방지하였으며 적의 정보까지 입수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전쟁의 종반에 가서는 남군이 발행한 위조화폐 적발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이 기관이 전후에는 'Secret Service'로서 연방정부의 정부기관이 되었다. 1999년 2월22일 스웨덴 스톡홀름에 본사를 둔 Securitas AB와 합병하였다. Pinkerton Solutions Magazine, Issue 2, 1999, 재인용.

6) 두산세계대백과. <http://www.encyber.com/search>.

7) Harvey Bustein, Introduction to Security, Prentice Hall Career & Technology(USA), 1994, p.2.

8) 강효현, "외국의 사설탐정제도의 활용사례와 법적 고찰", 수사연구(4월호), 2001, p.27.

J. Burns)는 1909년 Secret Service의 요원이었던 경험을 살려 'William J. Burns Detective Agency'를 설립하여 핀커튼 탐정회사와 유사한 업무를 하면서 이 두 회사는 오랫동안 미국지역의 중요한 탐정서비스를 비롯한 민간경비 계약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사실 미국이 탐정의 천국이라 할 정도로 탐정제도가 가장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은 건국 초기부터 정부가 지나치게 국민의 생활에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자신의 신체와 재산은 스스로 지킨다는 자구사상 및 자치제가 강하게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정치 및 법 제도 뿐만 아니라 공인탐정제도 역시 이러한 사상에 의해 발달되었고 현재까지도 전반적인 사회제도에 깊은 영향을 주고 있다.

2. 미국 탐정업의 현대적 조망

미국은 하나의 단일 정부가 아닌 50개의 주 정부와 수천 개의 카운티, 수만 개의 시(市)가 동등한 횡적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연합정부 체제로 각 정부마다 자체 법률시스템과 제도를 갖고 있지만 연방, 주, 카운티, 시 정부가 권한과 업무를 각각 분리, 충돌 없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탐정제도가 가장 발달되어 있고 거의 모든 사건에 탐정이 관여될 정도로 가장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나라이다. 특히 미국의 소송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측면은 사실문제를 제대로 알아내어 배심원에게 호소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므로 변호사와 더불어 소송을 유리하게 전개해 가기 위해서는 탐정들이 사실관계와 증인, 증거로 사용될 사안에 대해 얼마나 많이, 정확히 파악하느냐에 달려있으며 정보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소송에 있어서 단순히 법률적 지식으로 무장한 변호사 혼자서는 소송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의 변호사들에게는 어떤 분야의 사람들 보다 탐정이 중요한 협력자이다.

미국의 탐정제도는 연방법으로 관리했으나 각 주 정부마다 지역의 특성에 따라 독자적인 제도를 마련함에 따라 면허 제도를 주 정부에 이관해 관리하고 있다. 이처럼 연방정부가 주 정부로의 이관이 가능하게 된 것은 모든 관계법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미국 법의 기본정신에 기초를 두고 있다. 연방법이 허가를 하더라도 주법이 허가하지 않으면 행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미국의 법제도이다.

그러므로 미국은 법집행기관(Law Enforcement Agency)뿐만 아니라 탐정제도 역시 각 주별로 상이한 체계를 가지고 있어 대륙법계인 우리나라처럼 수사구조가 중앙집

권화 된 국가와는 달라서 일률적으로 설명하기는 곤란하지만 탐정관련 법 규정이 있는 주(State)들의 공통적인 사항과 일부 특성에 대해서만 논하기로 한다.

1) 탐정업의 전망 (Job Outlook)

미국의 경우 탐정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탐정업은 향후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탐정회사들도 점차 대규모화해 가는 경향이 두드러져 규모가 크고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탐정회사들이 작은 규모의 탐정사무소들을 합병하는 추세도 나타나고 있어서 앞으로의 탐정업 판도에도 큰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탐정의 수요와 고용에 대해 2014년까지 조망해 본 결과 다른 직업에 비해 매우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탐정업의 이와 같은 빠른 성장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요인들이 내재하고 있다.

- ① 범죄의 두려움, 소송의 증가, 모든 종류의 재산과 비밀 정보 보호의 필요성 증대.
- ② 은퇴하거나 퇴직한 직원들에게 탐정관련 업무와 같은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이들을 대치시키고 있는 현실.
- ③ 정보화 시대에서의 명의 도용, 스팸, 이메일 방해, 불법 다운로드로 인한 저작권 침해 등의 인터넷범죄의 확산.
- ④ 다양한 직업들이 급속히 증가하는 현대에서의 종업원 채용 시 기본적인 필수적인 종업원의 배경조사.
- ⑤ 재정 활동과 기업들의 세계적 성장으로 인한 내적, 외적인 재정상의 손실 관리, 산업 상 경쟁 상대사의 모니터, 비밀유출과 산업스파이 방지.

2) 탐정의 고용 수입 (Earnings)

탐정의 시간 당 임금은 경력이나 실력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는데 공인탐정의 경우 시간당 60\$~300\$ 정도이고, 일반탐정의 경우는 20\$~100\$정도(항공료, 숙식비, 정보비, 차량사용료 등의 경비는 별도 청구됨)로 타 업종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지만 그러나 경험이 없는 자는 취업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경험이나 학력에 전공분야가 있을 경

9) <http://www.bls.gov/oco/ocos157.htm#outlook>.

우는 유리한 점이 많다⁸⁾.

탐정들의 봉급은 회사의 고용주, 탐정의 전문성, 지역적 위치에 따라 변화가 많은데, 2004년 5월에 발표된 미국 탐정의 일년 평균 수입은 32,110\$ 로 나타났으며, 그들 가운데 50 %는 24,080 ~ 43,260\$, 하위 10%는 19,260 \$ 이하, 상위 10 %는 58,470 \$이상의 봉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⁹⁾.

이 같은 이유로 미국의 탐정들은 군, 경찰 등 국가기관의 수사관 출신이었거나 보험회사의 사고조사원, 소방서의 방화수사관 등의 민간기업에서 조사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수사관이었던 사람들이 다수이다

3. 탐정 용어의 정의

조사란 범죄의 존재와 특정한 행정상의 부정행위, 개인의 특성, 사실여부나 확인 등을 탐지하기 위하여 프로그램화된 근거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신뢰할 수 있는 증명 혹은 특정 기능이나 활동에 대한 확인 검사라고 할 수 있다.¹⁰⁾

‘Investigate’라는 단어는 ‘to track or trace’를 의미하는 라틴어의 ‘vestigare’로부터 유래되었으며, ‘추적하다, 수색하다, 조사하다. 정보나 사실들을 수집하다’는 뜻이 있다. 조사에 관한 기술과 방법은 시큐리티의 모든 단계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생활의 모든 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¹¹⁾ 탐정(探偵)이란 의뢰인으로부터 계약에 의한 보수를 받고 위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임받은 업무의 조사활동을 통하여 의뢰인의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영어로는 ‘Inspector General, The detective service, Private Investigator, Private Detective, Detective’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미국에서는 지역에 따라서 경찰권을 가진 사람을 가리킬 때만 Detective agency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의견차이가 분분하며 통상적으로 Private Investigator와 Private Detective를 구분 없이 사용하기도 한다.

10) 이동영(1999), 「21세기, 공인탐정이 된다」, 굿인포메이션, P.88.

11) <http://www.bls.gov/occ/ocos157.htm#outlook>.

12) Robert D. McCrie, Security Operations Management, Butterworth Heinemann, 2001, p.271.

13) Karen M. Hess·Henry M. Wroblewski(1992), Introduction to Private Security fourth edition, West Publishing Company, p.339.

4. 탐정의 종류

1) 공인탐정과 일반탐정의 구분

공인탐정과 일반탐정의 구분을 New Jersey 주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New Jersey 주에서는 공인탐정이 되려면 일정기간 수사나 조사관련 계통의 경력을 쌓은 후 전문 면허국이 실시하는 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 정부가 요구하는 일정액의 책임보험을 보유해야 한다. 탐정이 되려면 수사나 조사에 관련된 경험을 필수 조건으로 'Private Detective Act of 1939'의 면허규정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 조건에 부합이 되면 공인탐정에 해당되는 'Licensed Private Detective'로 분류된다. 공인탐정이 공인탐정회사를 운영하면서 New Jersey 주에 등록된 일반탐정들을 고용하게 되는데 이때의 고용된 탐정들은 일반탐정이라 할 수 있는 Private Investigator로 분류되기도 한다¹⁴⁾.

일반탐정은 면허를 가진 공인탐정회사에 속해 회사의 지시에 의해서만 일을 할 수 있으며 단독으로 일을 하거나 계약 혹은 상담을 할 수 없다.

일반탐정의 자격은 면허(License)라 부르지 않으며 취업을 할 수 있는 취업허가증(Employee Registration Card, Investigator permit)이다.

일반탐정은 일리노이 주(Illinois State)의 경우 전문 면허국에서 허가를 받은 탐정학교를 졸업해야 하며 시험 및 신원조회를 거쳐 취업허가증을 받게 된다. Washington의 경우처럼 일반탐정과 공인탐정의 구분 없이 공인탐정면허시험에 합격해야만 탐정 업무를 할 수 있는 탐정규정이 엄격한 곳이 있는가 하면 신원조회 만을 거쳐 면허국에 등록하고 교육은 회사에서 책임지도록 하는 곳도 있다.

14) http://www.pimagazine.com/private_investigator_faq.htm#investigator.

2) 탐정의 전문영역별 구분

탐정은 정보수집이라는 활동의 측면에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전문가란 특정분야에 대한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오랜 경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탐정을 전문영역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 법률탐정 (Legal Investigator)

이들은 주로 소송사건을 전문으로 하며 변호사들이 소송을 위해 필요로 하는 증거나 자료를 수집하거나, 피고의 변호를 돕기 위해 증인을 확보하고 경찰과 면담을 하며 증거를 수집·검토하거나 사진촬영을 하면서 스스로 법정에서 증언을 하기도 한다.

(2) 기업탐정 (Corporate Investigator)

주로 대기업 등에서 의뢰 회사의 내·외부에 대한 조사와 범죄의 음모를 밝혀내거나 회사 재산에 대한 절도, 상품선적 등과 관련하여 사기, 비용지출 내역의 허위사실 등을 조사하여 이에 연루된 직원들을 찾아내는 일을 한다.

(3) 재정탐정 (Financial Investigator)

주로 금전과 관련된 횡령, 사기 사건들을 전문으로 한다. 자신의 전문 회계지식을 이용하여 회사의 재무 상태나 횡령당한 회사 자금의 소재파악이나 추적을 할 수 있으며, 주로 투자은행이나 변호사들과 함께 작업하면서 자금거래에 연루되어 있는 회사나 개인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 보유한다. 특히 법원 등에서 사기 피의자에 대하여 변제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타인 명의 등으로 감추고 있을 때 이를 추적하여 은닉재산을 찾아내는 일 등을 주로 한다.

(4) 보험탐정 (Insurance Investigation)

주로 보험과 관련된 조사 업무로서 보험금을 노리고 자해행위, 보험사기 등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뒷조사나 사고, 재해의 적절한 피해보상 등에 관련된 업무를 전문으로 하며 보험회사가 입게 될 피해를 미리 예방하거나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5) 경비탐정 (Store Detective)

주로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 등의 대규모 판매시설회사에 소속되어 물건의 절도나

소매치기 등을 검거하거나, 사기행위·내부직원의 부정행위 등을 적발하거나, 직원의 고객에 대한 서비스 등의 근무태도를 감시하는 일을 주로 한다.

이외에도 자신의 전문분야에 따라 현상수배범 소재파악전문(유럽 등지에서는 세계적인 수배범을 전문으로 찾아내는 소위 헌터들이 활동 중이다), 뺑소니 차량 추적, 해외도피사범 소재파악 전문 등 여러 형태의 탐정이 있으며 탐정 자신의 능력이나 탐정 회사의 규모에 따라 여러 가지 업무를 동시에 할 수도 있다.¹³⁾

Ⅲ. 미국 탐정제도의 운용 실태

현재 미국에는 6만 여명의 공인탐정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전문적인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와 마찬가지로 탐정제도를 전문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주에서는 자체 주 정부의 해당 면허를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정액의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Alabama, Alaska, Colorado, Idaho, Mississippi, Missouri, South Dakota와 같은 주에서는 주 정부의 면허가 전혀 필요 없기도 하고, 또 몇몇 주에서는 사업자등록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탐정면허제가 없는 주라고 해서 탐정제도 자체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며 해당 주가 대도시에 있는지, 농촌지역인지, 기반산업이 무엇인지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탐정제도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 여부에 따른 차이인 것이다. 또한 자격정지 이상의 범죄경력이 없거나, 도덕적 성격에 이상이 없는 자로, 정신병이나 알코올 남용, 재산낭비자가 아니어야 한다는 정도의 제한이 따르기도 하는데 요건을 갖춘 자가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면 주 정부의 집행기관 및 FBI에서 범죄경력을 조사하여 면허를 발급하여 주고 있지만 실제로 사립탐정을 하려는 사람은 전직 수사관 출신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런 경험도 없는 18세 이상의 일반인이 사립탐정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¹⁴⁾.

실제로 대부분의 주에서는 탐정에 관련된 법률규정을 매우 엄격하게 하고 있으며, 탐정이나 탐정업의 요건들에 대해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사립

15) 이동영, 전계서, pp.22~23.

14) 황정익·김윤철·백창현(2005), “공인탐정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pp.20~38.

탐정협회에서도 가급적 자격요건을 법규정으로 더욱 강화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상당기간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자격을 부여하고, 사립탐정의 윤리강령도 제정하여 이를 어기는 자들에 대한 자체적인 징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15).

한 예로 펜실베니아 탐정협회의 윤리강령(PALI Code of Ethic)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3-1>과 같다¹⁶⁾.

<표 3-1 > 펜실베니아 주(State) 탐정협회 윤리강령(PALI Code of Ethic)

탐정들은 그들이 상대하는 모든 의뢰인들에게 항상 정직하고, 올바르고, 공정하고, 정중한 기준으로 대하여야 한다. 회원들은 그들의 업무 수행 시 이러한 높은 수준의 윤리적인 행위원칙들을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1.	* 의뢰받은 회원의 업무가 재판 시에는 그들의 업무 역할을 적절한 시기에 일반인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2.	* 회원은 다른 탐정 및 전문가들에게도 서로 정직해야 하며 어느 때라도 다른 탐정의 직업적 명성을 손상시키거나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 탐정의 업무 수행 시 비윤리적, 불법 또는 불공정한 행동에 대한 책임이 있을 경우 그 정보 및 사실은 윤리위원회에 정식으로 통보된다.
3.	* 회원이 의뢰받은 업무가 사적 혹은 영업상 이해관계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업무 수임을 자제해야 한다. * 고객은 공정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며, 탐정이 각자 의뢰받은 업무는 물론, 요금(수수료)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탐정의 의무에 대해 그 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4.	* 회원은 조사 업무상 그들의 고객과 입수된 정보에 대해서 비밀을 지켜야 한다.
5.	* 회원은 업무상 유혹이 있더라도 다른 탐정과 불법적으로 경쟁해서는 안 되며, 업무상 유혹이 있을 때마다 윤리적 태도로 자신을 지켜야 한다.
6.	* 회원은 상호 비방하거나 남을 기만해서는 안 되며, 직업상 품위와 명예를 불신시키거나 손상시키는 행위를 피해야 한다.
7.	* 회원은 업무 수행과 직업 자체를 규율하는 어떤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미 연방 헌법이나 각 주의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시민의 권리를 침범해서는 안 된다
8.	* 회원은 모든 진실과 사실에 기초하여 보고 하여야 하며, 정직한 의견을 표현해야 한다. * 고객을 위한 조사업무 시 획득된 결과에 대해 사실적, 진실적인 발표를 방해하는 사적인 느낌이나 편견이 있어서는 안 된다.

17) Occupational Outlook Handbook, U.S. Department of Labor, Bureau of Labor Statistics, <http://www.bls.gov/home.htm>.

16) The Pennsylvania Association of Licensed Investigators Code of Ethic, <http://www.pali.org/ethics.php>.

9	* 회원은 자신의 고객이 고품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기술적인 능력을 유지시켜야 하며 그러기 위해선 항상 전문적 성장과 훈련기회를 이용하여야 한다
10	* 회원의 의무는 이상과 같이 전문 탐정을 위해 장려하고 있는 PALI의 지침을 준수하여 가장 우수한 수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 자료 : <http://www.pali.org/ethics.php>의 내용에 따라 본 연구자 작성.

이와 같이 미국은 각 주 정부의 특색에 의한 탐정제도의 자격요건이 다르므로 미국 탐정제도의 일반적인 규정과 몇몇 주의 특색에 대해서만 비교, 고찰하고자 한다.

1. 탐정의 일반적 자격조건

미국에서 탐정회사의 정식명칭은 'Private Detective Agency'이며, 단어 그대로 일반인이 고용할 수 있는 사설 수사기관이다. 미국의 탐정제도는 각 주 정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탐정면허는 회사에 면허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의 운영자에게 면허를 부여하는데, 탐정회사는 영업허가만 가질 뿐 활동을 하는 모든 탐정들은 자격을 소유하여야 하며 면허가 있는 공인탐정에게 소속된 조사원들도 주(State) 당국에 등록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탐정회사의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개인회사의 경우 소유주가, 파트너십은 파트너 모두가, 법인일 경우는 회사의 운영권을 가진 사장·부사장 등 임원 중 최소 1명이 공인탐정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면 된다. 그러나 면허가 없는 사람은 회사의 운영에만 관여할 뿐 탐정행위는 할 수 없는 것이다. Florida 주(State)의 탐정 면허의 종류를 예를 들어 나타내면 다음의 <표3-2>과 같다.

<표3-2> Florida 주(State)의 탐정면허 종류

구 분		내 용
개인 면허 (For Individuals)	C (Private Investigator)	탐정
	CC (Private Investigator Intern)	인턴 탐정
	M, MS (Manager of a Private investigative Agency)	탐정회사 경영자
회사면허 (For Agencies)	A (Private Investigative Agency)	탐정회사
	AA (Private Investigative Agency Branch Office)	탐정회사지점(지사)

* 자료 : <http://licgweb.doacs.state.fl.us/investigations/types>의 내용에 따라 본 연구자 작성

탐정면허규정이 있는 주에서는 주 정부의 전문 면허국에서 면허를 발급하고 관리하는데, 탐정이 되려면 일반적으로 주 정부 전문 면허국의 교육면허를 가진 교육기관에서 일정기간(보통 2주~3개월) 기본교육을 마친 후 시험을 통해 취업허가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그러나 이 취업허가만으로는 독자적으로 일을 할 수 없으며 공인탐정이나 인가된 탐정회사나 사무소의 지휘, 감독 하에 일을 할 수 있다. 가령 California 주(State)의 경우, 일반탐정은 고용된 탐정회사에서 교육을 하도록 위임하는 반면 독일계 유럽인들의 정착으로 보수적인 Wisconsin 주(State)의 경우는 수사행위를 하는 모든 탐정들은 면허시험을 통해 공인탐정면허를 획득해야 한다¹⁷⁾.

미국의 각 주별로 요건을 비교해 보면 다음의 <표3-3>와 같으며, 탐정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일반적인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시민이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주에서는 외국인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둘째, 대부분의 주에서는 전과가 없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셋째, 좋은 품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해 놓은 곳도 많다.

넷째, 나이 제한은 대부분 까다롭지는 않지만 규정되어 있는 곳도 있다.

다섯째, 탐정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시험 및 연수과정을 거쳐야 하는 곳이 상당히 있다.

여섯째, 관련경력은 대부분의 주(州)에서 요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관련법규나 규제가 주 차원에서 전혀 없는 곳도 있으나, 군(County)이나 시(City) 단위의 지방자치단체별로 규제를 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¹⁸⁾.

19) 강효훈(2000), 「탐정은 벤처보다 낫다」, 동아일보사, pp.235~237.

18) 손상철(2005), 「민간조사학개론」, 서울:백산출판사. p.108.

<표3-3> 미국 각 주별 탐정의 일반적 자격 요건²¹⁾

주(State)	미국 시민	범죄 기록	좋은 품성	제한 연령	시험혹은 전문교육 과정	관련업무 경험년수	규정 없음
Alabama							○
Alaska							○
Arizona	○	○	○	21		○	
Arkansas	○	○	○	21		2	
California	○	○	○	18	○	2	
Colorado							○
Connecticut	○	○	○			5	
Delaware	○	○	○	25		5	
Florida	○	○	○		○	1-2	
Georgia	○	○	○		○	2	
Hawaii	○	○	○		○	4	
Idaho							○
Illinois	○	○	○			3	
Indiana	○	○	○			2	
Iowa	○	○	○	18			
Kansas	○	○	○			some	
Kentucky							○
Louisiana							○
Maine	○	○	○	18	○	1-6	
Maryland	○	○	○	25		3-5	
Massachusetts	○	○	○			3	
Michigan	○	○	○	25		3	
Minnesota	○	○	○	18		3	
Mississippi							○
Missouri							○
Montana	○	○	○		○	some	
Nebraska	○	○	○	21	○	some	
Nevada	○	○	○			5	
New Hampshire		○	○	18		2-4	
New Jersey	○	○	○	25		5	
New Mexico	○	○	○	25	○	3	
New York	○	○	○	25		3	
North Carolina	○	○	○	18		3	
North Dakota	○	○	○	18	○		
Ohio	○	○	○		○	2	

21) 이동영, 전계서, p.91.

Oklahoma	○	○	○	18	○	1	
Oregon							○
Pennsylvania							○
Rhode Island							○
South Carolina	○	○	○	18			
South Dakota							○
Tennessee		○			○	3	
Texas	○	○	○	18			
Utah							○
Vermont	○	○	○			some	
Virginia		○	○		○		
Washington	○	○	○		○	3	
West Virginia	○	○	○			1	
Wisconsin		○	○	18	○	some	
Wyoming							○

* 자료 : 이동영(1999), 「21세기 공인탐정이 된다」, 굿 인포메이션, p.91.

2. 탐정업무의 면허 요건

1) 면허시험 응시자격

공인탐정(Licensed Detective)면허에 응시하기위한 첫 번째 조건은 지난 5년간 최소 3년 이상 6천 시간을 공인탐정소를 통해 주 정부 면허국에 등록한 후 수사업무를 했거나 또는 3년 이상 경찰수사관이나 군 수사관 등으로 근무를 했으면 6천 시간의 경력으로 인정하여 탐정면허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그러나 New Jersey, Indiana, Florida, Maryland 주 등의 일부지역은 면허시험 없이 2년~5년의 일정기간 경력이 있고 규정에서 정한 결격사유만 없으면 면허를 발급하고 있다. 그 외 면허시험이 없는 주들은 대부분 신청자격을 그 지역 거주자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무시험으로 취득한 면허는 시험제도가 있는 주에서는 그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다음 응시조건으로는 범죄기록이 없어야 한다.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범죄 전과 의 경우는 보통 집행유예 등 형량이 모두 끝난 후 5년이 경과하면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물론 마약사용, 알코올 중독, 정신이상자는 응시자격이 없으며, 음주운전은 중범죄에 속하므로 일부 주 정부에서는 음주운전 기록자도 부적격자로 분류하기도 한다.

또한 군, 경찰, 공무원 등 국가기관에서 불명예 퇴직한 자나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를 받은 자도 법원의 결정에 따라 부적격자로 취급될 수 있다.

2) 면허시험

면허시험 응시자는 주 정부의 규정에 의한 일정기간의 실무경력을 우선적으로 요구하므로 실무경력의 요건을 채우면 실기시험 없이 필기시험만 치른다. 시험내용은 헌법, 연방법, 주법, 형법, 민법, 탐정법, 무기휴대 및 사용관리법, 사건처리, 범죄수사 기법(살인, 방화, 절도 등), 범죄심리학, 상황판단 및 대처능력, 보고서작성, 상담, 법정 증언, 증거수집 및 보존, 정보수집능력, 고객관리업무능력 등 보통 1백문항의 객관식으로 광범위하게 출제되며 이 가운데 70점 이상 점수를 획득하면 합격이다. 탐정필기 시험을 위한 예상문제집 참고서는 전혀 없고, 면허시험을 위한 교육학원도 없지만 법은 법전을 보면 되고 실무에 관련된 서적은 분야별로 많이 출간되어 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면허국이 추천하는 책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공부에 시간절약을 할 수 있다.

미국의 탐정학교는 기본적인 수사방법을 가르치지 탐정시험 준비를 시키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이처럼 출제범위가 광범위하여 이를 모두 가르치려면 최소 수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다가 수사기법이나 상황판단 능력 테스트 등은 경험 없이는 실제 수사상황에 대해 답을 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변호사 시험의 합격률이 80%이상인 데 비해 탐정면허시험은 20~30%로 아주 낮으며 보통 수차례, 심지어는 10회 이상 시험을 치르는 응시자도 있다. 탐정면허시험은 대부분 경험을 요구하는 관계로 대부분의 응시자는 수사기관의 전, 현직 수사관이며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수사기관의 국장급 등 고위간부도 상당수다. 결론적으로 탐정의 대부분이 경찰의 선배들이며 경찰들의 퇴직 후 선호직업으로 이들이 탐정으로 많이 지망하고 있으며 따라서 경찰과의 업무협조는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다²⁰⁾.

3) 탐정면허의 정지와 취소근거

탐정업의 면허를 허가 받았다고 하더라도 허가받은 탐정 당사자나 직원, 조합원, 관리자, 경영자 등이 다음 사항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법령 하에 발급된 인가를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는데 Michigan State의 법률규정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22) 강효훈, 전게서, pp.239~241.

- ① 인가 신청 또는 인가의 갱신이나 회복의 목적으로 신청과 관련하여 거짓진술을 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
- ② 본 법령 또는 본 법령 하에서 공포된 규칙 위반.
- ③ 부정행위 또는 사기를 수반한 경범죄 또는 중범죄, 정보나 증거의 무허가 누설 또는 매매
- ④ 미연방 또는 각 주, 또는 미연방이나 각 주의 정부기관의 경찰관이나 직원을 사칭
- ⑤ 위험무기의 불법 사용, 운반, 소지.

면허국에서 인가의 정지 혹은 취소를 통보한 후 24시간 내에 인가를 받은 자는 면허국에 인가와 신분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법에 따라 인가 반환을 불이행할 경우 경범죄에 해당한다. 면허국은 수수료 징세에서 실수, 부주의, 과실이나 법률에서 규정한 기일 내에 불이행하는 등의 책임이 없는 이상 인가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는다²¹⁾.

4) 탐정면허 발급 수수료

대부분의 주에서는 기본적으로 탐정 자격요건을 갖춘 후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면허를 발급해 주는데, 예를 들면 Connecticut State의 경우는 처음 탐정회사면허 (Private detective agency license)를 발급받을 땐 700\$를 내며, 1년 단위로 갱신할 땐 600\$를 낸다. 개인탐정 면허의 경우는 처음에는 600\$, 갱신 시에는 450\$를 낸다. New Jersey State에서는 개인의 경우 250\$, 회사, 협회 또는 법인 등의 탐정회사의 경우 300\$의 인가 수수료를 주 경찰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주 경찰청장이 승인한 인가는 2년간 유효하며, 인가 갱신 신청자는 갱신한 인가의 소재지당 개인인 경우 200\$, 회사, 협회 또는 법인인 경우 250\$의 수수료를 주 경찰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인가는 그 사유를 심문한 후에 주 경찰청장이 취소할 수 있는데, 인가의 취소나 포기의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면허국은 인가 또는 신청 과정 시 받은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탐정면허 발급에 필요한 수수료 및 보증금은 각 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몇몇 주의 내용을 참고로 작성한 내용은 아래의 <표3-4>과 같다.

26) Private detective license Act, Act 285 of 1965, legislativ council, State of Michigan, <http://www.legislature.mi.gov>.

<표3-4> 미국의 탐정면허 발급 수수료 비교 (Private detective license application fees)

주(State)	탐정면허 발급 수수료	갱신기간	보증채권금액
Connecticut ²²⁾	* 탐정회사면허-700\$(갱신:600\$) * 탐정개인면허-600\$(갱신:450\$)	1년	
New Jersey	* 탐정회사면허-300\$(갱신:250\$) * 탐정개인면허-250\$(갱신:200\$)	2년	* 개인-3,000\$ * 회사-5,000\$
Michigan ²³⁾	Private Detective Agencies	3년	10,000\$
	* Sole Proprietor/LLC - Corporation Application(신규)-750\$ - Corporation Renewal(갱신)-300\$ - Corporation Relicensure(재발급)-750\$ * Fingerprints-54\$(지문채취)		
	Branch Office		
	* Branch Office Application-125\$ * Branch Office Renewal-125\$ * Relicensure-125\$		
Washington ²⁴⁾	* Private Investigator Agency: With Unarmed Owner-550\$ * Private Investigator Agency: With Armed Owner-650\$ * Unarmed Private Investigator-150\$ * Armed Private Investigator-100\$ * Certified Trainer-25\$ * License Transfer-25\$		
Pennsylvania	* 탐정회사면허-300\$ * 탐정개인면허-250\$	2년	10,000\$

* 자료 : 각 주의 법률규정에 의해 본 연구자 작성

5) 공인탐정의 권한

공인탐정은 조사원이나 일반탐정을 고용인으로 두고 탐정회사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의뢰인에게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제한적이긴 하지만 정부기관의 기록 열람 및 수사기관들의 협조를 받을 수도 있으며 정부로부터 사건의 하청을 받을

23) <http://www.state.ct.us/dps>.

24) Private detective license Act, Act 285 of 1965, legislativ council, State of Michigan, <http://www.legislature.mi.gov>.

25) <http://www.ipiu.org/forums/showthread>.

수도 있다. 현재 많은 탐정들이 경찰과 공조를 하거나 관선변호사, 검찰은 물론 군 수사기관에 까지 계약을 맺고 일하고 있다.

검찰청의 경우는 매년 공개입찰을 통해 탐정들과 하청계약을 체결하며 법정 증언 시 전문인 자격을 인정받는다. 또 일부 정부기관 및 수사정보 자료회사들로부터 각종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탐정은 수사목적을 위해 정부기관원이나 수사기관 요원을 제외한 교사, 기자, 우체부 등 어떤 신분으로도 위장할 수는 있지만 감청이나 계좌추적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은 수사기관과 마찬가지로 법원의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합법적으로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6) 직원(탐정, 조사원)의 고용조건

미국 대부분의 주(State)에서는 모든 사립탐정이나 탐정회사는 일단 신뢰를 기반으로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비전문가나 소정의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나 업체, 또는 비도덕적인 성품의 사람들은 공공의 안전이나 복지에 해를 끼친다고 보아 이러한 사람들은 탐정업무를 할 수 없다고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미국사회에서 사립탐정은 자유업이지만 공공의 복지에 봉사하고 또한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최소한의 공적인 의무가 주어져 있다고 보기 때문에 주(State)정부는 사립탐정이나 탐정회사의 업무나 행동들이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s)과 조화를 이루는지의 여부는 항상 간섭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되고 있다²⁵⁾.

탐정면허를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 및 탐정회사는 관련 업무와 사업 운영의 보조를 위해 필요한 직원(조사원, 탐정)²⁶⁾을 고용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미국사회의 일반적 인식에 부합된 조건으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New Jersey 주(State)의 탐정관련 규정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²⁷⁾.

공인탐정 및 탐정회사가 사업과 관련하여 직원을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고용주는 직원의 행동 및 운영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만일 공인탐정이나 탐정회사가 거짓 진술이나 거짓으로 일반탐정이나 조사원을 고용하였다고 할 경우, 인가 취소 사유가 되며, 인가를 받은 탐정 회사에 탐정으로 고용되었다고 거짓 혹은 허위진술을 하는 자는 경범죄의 책임이 있다. 공인탐정이나 탐정회사가 고용하거나 고용하였던 자는 주(State)의 법 규정이 요구하는 발표나 주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한 조사 관

27) 황정의 외, 전계서, p.30.

28) 주(State)에서 규정한 법령에 의해 발급한 탐정면허 소지인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29) The Private Detective Act of 1939", http://www.state.nj.us/lps/njsp/about/pdet_rules.html

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용기간동안 획득한 정보를 고용주를 제외한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는 자 및 소속 탐정회사나 고용주에게 고의로 거짓보고나 거짓진술을 하는 자 또한 경범죄의 책임이 있다.

New Jersey 주(State)의 "The Private Detective Act of 1939"에 따라서 발급받은 탐정이나 탐정회사는 운영하는 사업의 어느 분야에서든, 다음의 중범죄나 위반사항을 범한 자와, 즉 그로 인해 초래되는 법률상 실격자를 고의로 고용해서는 안 된다:

- ① 권총이나 기타 위험무기의 불법 사용, 운반 또는 소지
- ② 강도용 연장을 제작 또는 소지
- ③ 장물 취득
- ④ 타인의 건물 불법침입
- ⑤ 탈옥수 지원
- ⑥ 습관성 마약의 불법 소지 또는 유통
- ⑦ 위의 항에서 상술한 범죄나 위반의 유죄선고의 이유로 주 경찰청장이나 다른 주의 당국이 그 인가에 대한 탐정 또는 조사원의 인가를 취소하거나 인가를 거부한 자. 만약 탐정면허 소지인이 거짓진술이나 허위진술로 어떤 자를 고용하거나 고용하였다고 할 경우, 그러한 거짓 진술 또는 허위진술은 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된다.

공인탐정이나 탐정회사가 고용한 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입증진술서(employer's statement)를 고용주에게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성명, 나이, 주소, 출생일과 출생 장소.
- ② 국적.
- ③ 진술 작성 직전일 까지 5년간 종사한 사업 또는 직업, 종사한 장소와 그 고용주의 성명(가능할 경우) 기재.
- ④ 중범죄나 부도덕한 행위를 포함한 범죄나 이 항에 규정된 경범죄나 위반을 범하지 않음.
- ⑤ 주(State) 경찰청장은 진술을 작성하는 자의 인격, 능력, 성실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이상의 정보를 규칙으로써 명령할 수 있음.

위와 같은 진술의 입증 즉시, 그를 고용한 탐정 및 탐정회사는 주(State) 경찰청장이 규칙으로 규정한 방식대로 피고용인의 양손의 지문 3부를 채취하여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직원을 고용한 탐정 및 탐정회사는 즉시 피고용인의 진술과 각 지문의 채취서류에 성명과 나이, 탐정면허의 인가 번호를 날인하여야 한다.

지문 제출 후 5일 내에 주(State) 경찰청장은 그 지문을 주(State)의 신분 확인사무소(State Bureau of identification)에 보관되어 있는 지문과 대조하도록 해야 하고, 기타 이주 혹은 해당 주(State) 외의 다른 공식적인 지문채취 파일에 대하여 지문을 체크하도록 한다. 만약 지문을 채취한 자가 중범죄나 이 항에서 규정한 범죄의 유죄선고를 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고용주에게 통보해야 하며 또한 피고용인이 거주하는 주(State)의 담당 검사에게 문제사항을 조회하여야 한다. 주(State) 경찰청장은 탐정 관련 법률규정에 의해 직원이 소속된 탐정이나 탐정회사가 보유한 지문을 항상 입수, 검열할 수 있다.

3. 탐정의 업무범위

즉 미국에서의 사립탐정은 자유업이지만 사립탐정도 공공의 복지에 봉사하고 또한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최소한의 공적인 의무가 주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립탐정이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성문규정을 통해 정해 놓고 있는데 Pennsylvania State, New Jersey State, California state, Florida State의 규정은 같은 내용이고, 다른 주(State)의 탐정제도에 대한 성문규정이 거의 비슷한 내용이므로 여기서는 Pennsylvania State에서 규정한 탐정의 업무 범위²⁸⁾를 살펴본다.

- (1) 미국 연방이나 주(State) 혹은 미국에 속한 영토에 대해 발생되거나 위협이 되는 범죄나 불법행위 등에 대한 조사.
- (2) 특정 개인이나 단체, 협회, 조직, 사회분야, 동료, 법인 등의 확인 습관, 제휴, 관계, 거래, 평판, 특성 등에 대한 조사.
- (3) 증인 및 그 밖의 사람들에 대한 신뢰성 조사.
- (4) 실종자의 소재파악.
- (5) 분실 및 도난재산의 회복 및 소재파악.
- (6) 화재, 명예훼손, 비방, 손해, 사고, 신체장애, 부동산 혹은 동산에 대한 책임의 원인과 근거 등의 파악.
- (7) 특정인, 특정조직, 사회, 협회, 법인, 직원 등과 관련된 사실 확인.
- (8) 파업으로 인해 일을 그만둔 사람이나 그 당시 고용주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 (9) 종업원, 관리인, 계약자, 하도급자들의 행위, 정직, 효율, 충성 또는 활동에 관한

30) The Pennsylvania Private Detective Act of 1953, § 12. Definitions. <http://www.pali.org/papdact.htm>.

사실 조사.

(10) 형사재판, 민사재판 시 조사위원회, 판정위원회, 중재위원회의 판정 및 조정 전에 사용 될 증거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일.

미국은 각 주마다 서로 다른 법규와 제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주 경계를 넘어서 사립탐정의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주 경찰과 마찬가지로 관할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주와 조약을 맺어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예를 들면, 2003년4월16일 Florida주 정부는 다른 몇몇 주와 상호 조약을 맺어 탐정들이 다른 주에서 탐정면허를 다시 발급받지 않고도 자신의 주 경계를 넘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Florida State의 상호조약 내용은 <표3-5>와 같으며 이러한 상호조약으로 인해 불필요한 관료주의적 간섭기능을 제거할 수 있어서 탐정산업의 발전은 물론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되고, 탐정의 수사비용까지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²⁹⁾.

<표3-5> Florida주의 사립탐정 상호조약 (Private Investigator Reciprocity)

구 분	내 용
상호조약 규정 (Provisions of the Reciprocity Agreements)	1. 탐정이 다른 주에서 조사활동을 하려는 사건조사는 자신의 주에서 의뢰받아 시작되어야 한다. 2. 탐정은 다른 주에서 조사할 동안 한 사건 당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3. 탐정은 다른 주에서 조사활동을 하는 동안 사업체 신청, 설립 및 거주지 정착은 금지된다. * 이 상호조약은 체결한 주에서만 효력이 있다.
상호조약 체결 주 (List of Reciprocity States)	California Georgia Louisiana North Carolina Oklahoma Tennessee Virginia

* 출처 : <http://licgweb.doacs.state.fl.us/investigations/reciprocity.html> 의 내용에 의해 작성.

31) 황정익 외, 전게서, PP.28~30.

IV. 결론 및 제언

우리나라 탐정제도의 미비로 인해 탐정관련 업무가 음성적, 불법적으로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국민들이 갖고 있는 과거의 부정적·불법적인 탐정의 이미지를 일식시키고,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의 탐정업무 및 활동의 불합리한 역차별 구조 해결 뿐만 아니라 이미 상당한 규모로 형성된 세계 탐정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 및 공인탐정제도의 긍정적인 면이 사회 전체에 주는 효과와 영향을 조망해 볼 때 국민의 치안서비스 해결, 국제 경쟁력 제고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 개방화 시대에 대응한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우리나라의 공인탐정제도의 도입과 발전방향의 제시에 관한 연구는 매우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 공인탐정제도의 도입을 위한 입법안 추진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탐정제도가 가장 발달되어 있고 우리나라 탐정 입법안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미국 탐정제도의 심층적 연구로 우리나라의 제도 정착을 위한 발전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본 연구의 결과로 아래와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탐정업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와 고용 등의 급속한 증가 추세로 탐정업의 국민에 대한 필요성과 그 직업적 전망은 매우 밝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민간영역을 활용한 국민의 치안서비스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국가의 치안서비스 부담은 감소되었지만 탐정업무 상 개인의 인권과 사생활 침해 등의 불법영역에 대해 미국탐정협회 스스로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자각과 자격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 대부분의 주가 점점 탐정법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셋째, 현재 국회통과를 앞둔 우리나라의 탐정관련 입법안은 주요 항목만 명시되어 있을 뿐 추후 우리나라의 탐정제도 실시예 대비한 세부적인 내용의 법률 규정 사항 등에 대한 지속적인 수정 보완을 위해서라도 미국 각 주의 탐정제도에 관한 심층적 연구는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방대한 미국의 전체적인 탐정제도 내용을 다룰 수가 없음을 한계로 제시 하였으며 우리나라 탐정제도의 시행에 앞서 지속적인 후속 연구로 보완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강효훈(2000). 『탐정은 벤처보다 낫다』. 서울:동아일보사.
- 강효훈(2001). “외국의 사설탐정제도의 활용사례와 법적 고찰”. 『수사연구』, 4월호.
- 손상철(2005). 『민간조사학개론』. 서울:백산출판사.
- 이동영(1999). 『21세기 공인탐정이 된다』. 서울:굿 인포메이션.
- 이윤근·배철호(2005). 『민간경비론』. 서울:엑스퍼트.
- 황정익·김윤철·백창현(2005), “공인탐정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 John P. Kenny·Harry W. More(1994). Principles of investigation. West Publishing Company.
- Harvey Bustein(1994). Introduction to Security. Prentice Hall Career & Technology(USA).
- Karen M. Hess·Henry M. Wroblewski(1992). Introduction to Private Security fourth edition. West Publishing Company.
- Pinkerton Solutions Magazine(1999). Issue 2.
- Robert D. McCrie(2001). Security Operations Management, Butterworth Heinemann.
- 探偵業の業務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案.
- New Jersey State, Private Detective Unit, “The Private Detective Act of 1939”.
- Occupational Outlook Handbook. U.S. Department of Labor, Bureau of Labor Statistics.
- The Pennsylvania Private Detective Act of 1953. § 12. Definitions.
- <http://www.shugiin.go.jp>.
- <http://www.bls.gov/oco/ocos157.htm#outlook>.
- <http://www.state.ct.us/dps>.
- <http://www.ipiu.org/forums/showthread>.
- Private detective license Act, Act 285 of 1965, legislativ council, State of Michigan.
- <http://www.encyber.com/search>.
- <http://www.legislature.mi.gov>.
- <http://kin.naver.com>.
- <http://www.njsp.org/about/pdet>.

http://www.state.nj.us/lps/njsp/about/pdet_rules.html.

<http://licgweb.doacs.state.fl.us/investigations/reciprocity.html>.

<http://www.pali.org/papdact.htm>.

<http://www.pali.org/ethics.php>.

http://www.pimagazine.com/private_investigator.

ABSTRACT

A Study on the Private Investigator System in U.S.A.

Kang, Young sook

Kim, Tae hwan

Private detectives and investigators offer many services, including executive, corporate, and celebrity protection; pre-employment verification; and individual background profiles. They also investigate computer crimes, personal injury cases, insurance claims and fraud, child custody and protection cases, missing persons cases, and premarital screening.

This paper focuses on a private detective or investigator system in most developed U.S.A, but it is not easy to describe that system.

Licensing requirements vary in U.S.A. Some States have few requirements, and many other States have stringent regulations. A growing number of States are enacting mandatory training programs for private detectives and investigators. Employment and need of private detectives and investigators is expected to grow faster than the average for all occupations.

Thus, it is reasonable that korean government should permit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find the way to minimize the side effects of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instead of banning the service totally.

【Key words : Private investigator, Licensed Private Detective, Private Detective Act】